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 안 번 호 : 제2821호 및 제2823호

다. 제 출 일 자 : 2025. 5. 26.

라. 회 부 일 자 : 2025. 5. 29.

2. 제안내용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 감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 감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세입 · 세출결산 개요

가. 세입결산 총괄

- 예 산 현 액 : 18억 44백만원

- 징수결정액 : 26억 90백만원
- 실제수납액 : 14억 47백만원
- 정리보류액 : 9억 31백만원
- 미 수 납 액 : 3억 12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53.8%(전년도 35.8%)임
-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8억 44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억 90백만 원이며 이 중 14억 47백만 원을 수납하고(징수율 53.8%), 3억 12백만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정리보류액은 9억 31백만 원임

<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세입결산 총괄 >

(단위: 백만 원)

회 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1,844	2,690	1,447	53.8	931	312
일 반 회 계	1,844	2,690	1,447	53.8	931	312

※ 정리보류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나. 세출결산 총괄

- 예 산 액 : 305억 41백만 원
- 예산성립후 증감 : 31억 92백만 원
- 예산현액 : 337억 33백만 원
- 지 출 액 : 256억 11백만 원
- 이 월 액 : 53억 78백만 원

○ 집행잔액 : 27억 44백만 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8.1%(전년도 4.9%)가 발생

- 집행잔액 사유별 금액

- 예산절감액 40백만 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61백만 원
- 지출잔액(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23억 43백만 원

○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37억 33백만 원으로 이 중 256억 11백만 원을 집행하고 53억 78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44백만 원(불용률 8.1%)이 발생하였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이월액은 일반회계 36억 3백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 52백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8억 23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24억 97백만 원(불용률 10.6%), 주택사업 특별회계 28백만원(불용률 0.9%), 도시개발특별회계 2억 19백만 원(불용률 3.1%)이 각각 발생하였음

<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세출결산 총괄 >

(단위: 백만 원)

회 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 계	33,733	25,611	5,378	-	2,744	8.1
일 반 회 계	23,598	17,499	3,603	-	2,497	10.6
특 별 회 계	10,135	8,112	1,775	-	247	2.4
주택사업특별회계	3,009	2,029	952	-	28	0.9
도시개발특별회계	7,126	6,084	823	-	219	3.1

4.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26억 90백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4억 47백만 원을 수납(징수율 53.8%)하였고 정리보류액은 9억 31백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12백만 원임

< 일반회계 세입결산 >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1,844	2,690	1,447	53.8	931	312
세외수입	495	1,341	98	7.3	931	312
경상적세외수입	1.5	3.3	3.3	100	-	-
임시적세외수입	411	1,291	48	3.7	931	31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2	47	47	100	-	-
보조금	1,349	1,349	1,349	100	-	-
국고보조금등	1,349	1,349	1,349	100	-	-

- 세입은 주로 그외수입, 기타과태료 등으로 구성됨

< 일반회계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 >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1,844	2,690	1,447	53.8	931	312
세외수입	495	1,341	98	7.3	931	312
경상적세외수입	1.5	3.3	3.3	100	-	-
기타이자수입	1.5	3.3	3.3	100	-	-
임시적세외수입	411	1,291	48	3.7	931	312
불용품매각대금	-	1	1	100	-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0.5	16	16	100	-	-
그외수입	392	24	24	100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	1,250	7	59.2	931	312
기타과태료	82	47	47	100	-	-
보조금	82	47	47	100	-	-
국고보조금등	1,349	1,349	1,349	100	-	-
국고보조금	1,349	1,349	1,349	100	-	-

2) 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35억 98백만 원으로 이 중 174억 99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3백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97백만 원(불용률 10.6%)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 주택사업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과목별 내역 >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총 계	계	30,541	33,733	31,016	25,611	-	5,378 (15.9%)	2,744 (8.1%)
	사 업 비	29,891	33,083	30,414	25,009	-	5,378 (16.3%)	2,696 (8.1%)
	재 무 활 동 비	0.7	0.7	0.7	0.7	-	-	0.002 (0.2%)
	행정운영경비	650	650	601	601	-	-	48 (7.4%)
일반회계	소 계	21,245	23,598	21,174	17,499	-	3,603 (15.3%)	2,497 (10.6%)
	사 업 비	20,595	22,948	20,572	16,897	-	3,603 (15.7%)	2,449 (10.7%)
	재 무 활 동 비	0.7	0.7	0.7	0.7	-	-	0.002 (0.2%)
	행정운영경비	650	650	601	601	-	-	48 (7.4%)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 계	2,799	3,009	2,981	2,029	-	952 (31.6%)	28 (0.9%)
	사 업 비	2,799	3,009	2,981	2,029	-	952 (31.6%)	28 (0.9%)
도시개발 특별회계	소 계	6,497	7,126	6,861	6,084	-	823 (11.6%)	219 (3.1%)
	사 업 비	6,497	7,126	6,861	6,084	-	823 (11.6%)	219 (3.1%)

3) 세출예산 집행관련

(1) 예산 이용 해당 없음

(2) 예산 이체

- 예산 이체는 총 43건, 41억 52백만 원으로 '24.1.1일 및 '24.7.1일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임

(3) 예산전용·변경·예비비지출 해당 없음

(4) 다음연도 이월

- 명시이월은 해당없음
- 사고이월은 총 15건, 36억 3백만 원임

▪ 2024 도시계획 정책 현안검토 운영(시설비)	86백만 원
▪ 국립서울현충원 주변부 공간구상(시설비)	286백만 원
▪ 비윤드 조닝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 마련(시설비)	191백만 원
▪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시설비)	230백만 원
▪ 저층 주거지 관리체계 개선(시설비)	39백만 원
▪ 보행일상권 조성계획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시설비)	99백만 원
▪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연구용역비)	178백만 원
▪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사무관리비)	49백만 원
▪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시설비)	75백만 원
▪ 미래서울 도시관 조성(시설비)	1,178백만 원

- 신속통합기획 수립(시설비) 753백만 원
- 新 용산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구상(시설비) 96백만 원
- 특별계획구역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시설비) 43백만 원
- 新지구단위계획 체계 개편 및 수립기준 재정비(시설비) 191백만 원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연구용역비) 110백만 원

○ 계속비이월은 해당없음

(5) 집행잔액

○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6%인 24억 97백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예산절감액 40백만 원
-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339백만 원
- 지출잔액(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2,118백만 원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1) 세입결산

- 해당없음

2) 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억 9백만 원으로 이 중 20억 29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52백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28백만 원임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주택사업 특별회계	2,799	3,009	2,981	2,029	952 (31.9%)	28 (0.9%)
사업비	2,799	3,009	2,981	2,029	952 (31.9%)	28 (0.9%)

3) 세출예산 집행 관련

(1) 예산 이용 해당 없음

(2) 예산 이체

- 예산 이체는 총 15건, 28억 9백만 원으로 '24.1.1일 및 '24.7.1일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임

(3) 예산전용·변경·예비비지출 해당 없음

(4) 다음연도 이월

○ 명시이월은 해당없음

○ 사고이월은 총 5건, 9억 52백만 원임

- | | |
|---|---------|
| ▪ 충무로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시설비) | 239백만 원 |
| ▪ 광희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시설비) | 144백만 원 |
| ▪ 주교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시설비) | 99백만 원 |
| ▪ 효제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시설비) | 196백만 원 |
| ▪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시설비) | 274백만 원 |

○ 계속비이월은 해당없음

(5) 집행잔액

○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9%인 28백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 | |
|----------------------|--------|
| ▪ 지출잔액(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 28백만 원 |
|----------------------|--------|

다.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 해당없음

2) 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1억 26백만 원으로 이 중 60억 84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8억 23백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2억 19백만 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도시개발 특별회계	6,497	7,126	6,861	6,084	823 (12.0%)	219 (3.1%)
사업비	6,497	7,126	6,861	6,084	823 (12.0%)	219 (3.1%)

3) 세출예산 집행관련

(1) 예산 이용 해당 없음

(2) 예산 이체

- 예산 이체는 총 6건, 10억 14백만 원으로 '24.1.1일 및 '24.7.1일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임

(3) 예산전용·변경·예비비지출 해당 없음

(4) 다음연도 이월

○ 명시이월은 해당없음

○ 사고이월은 총 5건, 8억 23백만 원임

- | | |
|--|---------|
|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지원)(시설비) | 97백만 원 |
| ▪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설비) | 313백만 원 |
| ▪ 수서택지개발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설비) | 177백만 원 |
| ▪ 서울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시설비) | 51백만 원 |
| ▪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임상불량지 합리적 활용방안 마련(시설비) | 185백만 원 |

○ 계속비이월은 해당없음

(5) 집행잔액

○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1%인 2억 19백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 | |
|----------------------|---------|
| ▪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 22백만 원 |
| ▪ 지출잔액(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 197백만 원 |

5.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결산

가. 기금 총괄

-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재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2항¹⁾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으로 조성되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6조²⁾에서 정한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사무관리비, 그 밖의 부대경비 등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2020년 설치되었음
- 기금의 존속기한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4조³⁾에 따라 '29.12.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통해 연장할 수 있음
- 2024회계연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성 결산액은 0원 임

<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성 총괄 >

년 도	전년도말 조성액 ㉑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㉒=㉑+㉓)
		계 ㉓=㉔-㉕	수 입 액 ㉔	지 출 액 ㉕	
2024년	-	-	-	-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2.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 2)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 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금 수입 결산

○ 해당 없음

〈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수입 결산 〉

(단위: 백만 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액(A)	실제 수납액(B)	증감(B-A)
총 계	-	-	-	-	-

다. 기금 지출 결산

○ 해당 없음

〈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지출 결산 〉

(단위: 백만 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A)	지출액	이월액	실 지출액 (B)	증감 (B-A)
총 계	-	-	-	-	-	-	-

6.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총괄

-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세입결산 결과 합계 징수율은 53.8%로, 일반회계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발생에 따른 것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8억 44백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26억 90백만 원 대비 53.8%인 14억 47백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9억 31백만 원, 미수납액은 3억 12백만 원임

<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세입결산 총괄 >

(단위: 백만 원)

회 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1,844	2,690	1,447	53.8	931	312
일 반 회 계	1,844	2,690	1,447	53.8	931	312

※ 정리보류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 정리보류액은 ‘시설계획과’에서 ‘지난년도수입’으로 9억 22백만 원이 건축주 무재산 정리 보류 처분되었고, ‘도시관리과’에서 ‘지난년도수입’ 9백만 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정리 보류된 금액으로 확인됨
- 미수납액은 ‘토지관리과’에서 ‘기타과태료’로 209건 2억 58백만 원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고, ‘시설계획과’에서 ‘지난년도수입’으로 1건

53백만 원이 건축주의 무재산 등의 사유로 기반시설부담금 미수
 납된 것으로 확인되며 ‘도시관리과’의 ‘지난년도수입’ 중 1건 1백
 5십만 원은 소송승소에 따른 비용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납세자의 고의 체납 또는 채권소멸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재산 조회 및 압류강
 화 등의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조세 멸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부서별 세입 현황 >

(단위: 백만 원)

부 서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징 결	수 정 액	실수납액	정 보 류 액	미수납액	미 수 납 액	사 유
도시공간 전략과	그외수입	-	0.2	0.2	-	-	-	-	
도시 재창조과	그외수입	-	0	0	-	-	-	-	
신속통합 기획과	그외수입	-	0	0	-	-	-	-	
도시 관리과	그외수입	-	0.9	0.9	-	-	-	-	
	지난년도수입	-	10	-	9 (건축주 무재산)	1.5	소송비용(소송승소에 따른 비용 회수) (1건)		
시설 계획과	불용품매각대금	-	1	1	-	-	-	-	
	그외수입	392	23	23	-	-	-	-	
	지난년도수입	-	975	-	922 (소멸시효 완성)	53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액 (건축주 무재산 등)(1건)		
토지 관리과	기타이자수입	2	3.3	3.3	-	-	-	-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0.5	16	16	-	-	-	-	
	그외수입	-	0	0	-	-	-	-	
	지난년도수입	19	265	7	-	258	연례적으로 누적된 과태료 체납(209건) (납부태만 등)		
	기타과태료	82	47	47	-	-	-	-	

〈 최근 3년간 도시공간본부 회계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 원)

예산 과목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일반 회계	2024	1,844	-	1,844	2,690	1,447	-	1,447	931	312
	2023	746	-	746	2,017	711	-	711	74	1,232
	2022	1,244	-	1,244	2,634	1,310	-	1,310	86	1,237
균형 발전 특별 회계	2024	-	-	-	-	-	-	-	-	-
	2023	18	-	18	18	18	-	18	-	-
	2022	10	-	10	24	23	-	23	-	0.3

〈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일반회계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 〉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1,844	2,690	1,447	53.8	931	312
세외수입	495	1,341	98	7.3	931	312
경상적세외수입	2	3	3	100	-	-
기타이자수입	2	3	3	100	-	-
임시적세외수입	411	1,291	48	3.7	931	312
불용품매각대금	-	1	1	100	-	-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0.5	16	16	100	-	-
그외수입	392	24	24	100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	1250	7	59.2	931	312
기타과태료	82	47	47	100	-	-
보조금	82	47	47	100	-	-
국고보조금등	1,349	1,349	1,349	100	-	-
국고보조금	1,349	1,349	1,349	100	-	-

나. 세출결산 총괄

- 2024 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337억 33백만 원, 지출액 256억 11백만 원(집행률 75.9%), 다음연도

이월액 53억 78백만 원(이월률 15.9%), 집행잔액은 27억 44백만 원(불용률 8.1%)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35억 98백만 원으로 이 중 174억 99백만 원(집행률 74.2%)을 지출하였고, 36억 3백만 원(이월률 15.3%)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97백만 원(불용률 10.6%)이 발생하였음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0억 9백만 원으로 이 중 20억 29백만 원(집행률 67.4%)을 지출하였고, 9억 52백만 원(이월률 31.6%)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백만 원(불용률 0.9%)이 발생하였음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1억 26백만 원으로 이 중 60억 84백만 원(집행률 85.4%)을 지출하였고, 8억 23백만 원(이월률 11.6%)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9백만 원(불용률 3.1%)이 발생하였음

<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세출결산 회계별 · 과목별 내역 >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총 계	계	30,541	33,733	31,016	25,611	-	5,378 (15.9%)	2,744	(8.1%)
	사 업 비	29,891	33,083	30,414	25,009	-	5,378 (16.3%)	2,696	(8.1%)
	재무활동비	0.7	0.7	0.7	0.7	-	-	0.002	(0.2%)
	행정운영경비	650	650	601	601	-	-	48	(7.4%)
일반회계	소 계	21,245	23,598	21,174	17,499	-	3,603 (15.3%)	2,497	(10.6%)
	사 업 비	20,595	22,948	20,572	16,897	-	3,603 (15.7%)	2,449	(10.7%)
	재무활동비	0.7	0.7	0.7	0.7	-	-	0.002	(0.2%)
	행정운영경비	650	650	601	601	-	-	48	(7.4%)
주택사업	소 계	2,799	3,009	2,981	2,029	-	952 (31.6%)	28	(0.9%)

특별회계	사 업 비	2,799	3,009	2,981	2,029	-	952	(31.6%)	28	(0.9%)
도시개발특별회계	소 계	6,497	7,126	6,861	6,084	-	823	(11.6%)	219	(3.1%)
	사 업 비	6,497	7,126	6,861	6,084	-	823	(11.6%)	219	(3.1%)

-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집행잔액(27억 44백만 원)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신속통합기획과 16억 76백만 원(불용률 22.4%), 도시관리과 5억 22백만 원(불용률 7.5%), 도시공간전략과 2억 62백만 원(불용률 7.3%)으로 3개 부서의 집행잔액이 전체의 89.7%(24억 60백만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부서별 집행잔액 >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불용률 (E/A)
			계(C)	명시이월	사고이월			
총 계	33,733	25,611	5,378	-	5,378	-	2,744	8.1%
도시공간 전략과	3,596	2,962	372	-	372	-	262	<u>7.3%</u>
도시계획과	3,556	2,648	861	-	861	-	48	1.3%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2,780	1,563	1,178	-	1,178	-	39	1.4%
도시 재창조과	3,222	2,241	952	-	952	-	29	0.9%
신속통합 기획과	7,472	5,043	753	-	753	-	1,676	<u>22.4%</u>
도시관리과	6,979	5,540	916	-	916	-	522	<u>7.5%</u>
시설계획과	1,990	1,586	347	-	347	-	57	2.9%
토지관리과	4,138	4,028	-	-	-	-	111	2.7%

〈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 〉

(단위: 백만 원)

연 번	소관 부서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액 발생사유
1	도시공간 전략과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393	340	-	54 (13.6%)	▶예측 대비 해외 출장 횟수 감소 및 근거리(일본) 출장 등으로 집행 잔액 발생
2	도시공간 전략과	서울역 일대 마스터 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	340	248	-	92 (26.9%)	▶당선 결과에 따른 보상비 지급으로 잔액 및 직접경비 정산에 따른 사 업비 조정, 낙찰차액
3	도시공간 전략과	기본경비	236	196	-	40 (17.0%)	▶23년 대비 국내여비 대폭 감액 편성 (23년 205,800천 원→24년 106,204 천 원) 하였으나 집행잔액 발생
4	도시공간 전략과	노량진역 일대지역 활성화 방안	200	168	-	32 (15.9%)	▶낙찰차액
5	도시 계획과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	200	-	178	22 (10.9%)	▶낙찰차액
6	도시 재창조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60	42	-	18 (30.5%)	▶자문 회의 수당 등 지출 집행 잔액
7	도시 재창조과	사직2구역 공동이용시설 관리	7	6	-	1 (10.5%)	▶공동이용시설 관리 지출 집행 잔액
8	신속통합 기획과	신속통합기획 수립	6,878	4,449	753	1,676 (24.4%)	▶신속통합기획 재개발후보지 선정 수 감소에 따른 용역건수 감소로 인한 불용
9	도시 관리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212	154	-	58 (27.2%)	▶심의대상 감소에 따른 위원회 개최 횟수 축소로 집행잔액 발생
10	도시 관리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The-K호텔) 운영	312	-	-	312 (100%)	▶사전협상 진행중으로 감정평가 미 시행
11	토지 관리과	네트워크 RTK시스템 및 KRAS 유지보수	61	55	-	6 (10.6%)	▶계약심사 및 계약 진행에 따른 낙찰 차액 발생
12	토지 관리과	기본경비	65	59	-	7 (10.3%)	▶지적측량장비 유지 보수 및 업무용 차량 유지비용으로 수리 등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발생
합 계			8,964	5,716		2,316	

다. 세출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 결과

1) 예산의 이용과 이체, 전용, 변경,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1) 예산 이용 해당 없음

(2) 예산 이체

-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세출결산 결과 예산 이체는 총 64건 79억 75백만 원이 발생하였고,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총 43건 41억 52백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총 15건 28억 9백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총 6건 10억 14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4.1.1일⁴⁾ 및 '24.7.1일⁵⁾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임

<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 >

총 43건		41억 52백만 원
1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도시공간전략과) 기본경비(국내여비)	2백만 원
2	■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 도시계획과)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 기반 구축(사무관리비)	16백만 원
3	■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 도시계획과)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 기반 구축(시책추진업무추진비)	7백만 원
4	■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 도시계획과) 미래 공공기여 자원의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시설비)	145백만 원
5	■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 도시계획과) 기본경비(사무관리비)	26백만 원
6	■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 도시계획과) 기본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만 원
7	■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 → 도시공간전략과) 한강수변 공간기획 및 세부실행전략 마련(시설비)	365백만 원
8	■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 → 도시공간전략과) 상암일대 주요거점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조 재편 및 종합구상(시설비)	145백만 원
9	■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 도시공간전략과) 기본경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	10백만 원
10	■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 도시공간전략과) 기본경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6백만 원

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서울특별시규칙 제4604호, 2023. 12. 29., 일부개정]

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서울특별시규칙 제4641호, 2024. 6. 28., 일부개정]

11	■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도시재창조과) 기본경비(사무관리비)	52백만 원
12	■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도시재창조과) 기본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4백만 원
13	■ (도시계획과 → 도시재창조과) 역세권 활성화사업 자문단 운영(사무관리비)	27백만 원
14	■ (도시계획과 → 도시재창조과)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 발굴 지원(시설비)	25백만 원
15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무관리비)	6백만 원
16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공공운영비)	238백만 원
17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전산개발비)	273백만 원
18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백만 원
19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사무관리비)	143백만 원
20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국외업무여비)	50백만 원
21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백만 원
22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특정업무경비)	90백만 원
23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2024 도시계획 정책 현안검토 운영(사무관리비)	50백만 원
24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2024 도시계획 정책 현안검토 운영(시설비)	450백만 원
25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 사고이월 예산 2024 도시계획 정책 현안검토 운영(시설비)	42백만 원
26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한강변 특화경관 형성을 위한 시뮬레이션(시설비)	188백만 원
27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경부간선도로 일대 공간개선 기본구상(시설비)	294백만 원
28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기타보상금)	200백만 원
29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시설비)	90백만 원
30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 사고이월 예산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시설비)	50백만 원
31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백만 원
32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시설비)	300백만 원
33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국립서울현충원 주변부 공간구상(사무관리비)	1백만 원
34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국립서울현충원 주변부 공간구상(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백만 원
35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국립서울현충원 주변부 공간구상(시설비)	300백만 원

36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서울대개조관련 新 도시계획체계 마련(사무관리비)	5백만 원
37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서울대개조관련 新 도시계획체계 마련(시설비)	195백만 원
38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기본경비(사무관리비)	64백만 원
39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기본경비(국내여비)	104백만 원
40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기본경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백만 원
41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기본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만 원
42	■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기본경비(직책급여업무수행경비)	33백만 원
43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사무관리비)	12백만 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이체 현황 〉

총 15건		28억 9백만 원
1	■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 도시재창조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도심외 재개발사업)(사무관리비)	6백만 원
2	■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도시재창조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사무관리비)	60백만 원
3	■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도시재창조과) 남대문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재정비(시설비)	124백만 원
4	■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도시재창조과) 사직2구역 공동이용시설 관리(사무관리비)	6백만 원
5	■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도시재창조과) 사직2구역 공동이용시설 관리(공공운영비)	2백만 원
6	■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도시재창조과) 충무로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시설비)	478백만 원
7	■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도시재창조과) 광희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시설비)	361백만 원
8	■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도시재창조과) 주교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시설비)	330백만 원
9	■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도시재창조과) 효제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시설비)	392백만 원
10	■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도시재창조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사무관리비)	13백만 원
11	■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도시재창조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공공운영비)	3백만 원
12	■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도시재창조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백만 원
13	■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도시재창조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백만 원
14	■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도시재창조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시설비)	900백만 원
15	■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도시재창조과) ※ 사고이월 예산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시설비)	86백만 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이체 현황 〉

총 6건		10억 14백만 원
1	■ (미래공간기획관 용산입체도시담당관 → 도시공간전략과) 옛 노량진 수산시장 사전협상 추진(사무관리비)	480백만 원
2	■ (미래공간기획관 용산입체도시담당관 → 도시공간전략과) 여의도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사무관리비)	7백만 원
3	■ (미래공간기획관 용산입체도시담당관 → 도시공간전략과) 여의도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시설비)	22백만 원
4	■ (미래공간기획관 용산입체도시담당관 → 도시공간전략과) 한강철교 남단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시설비)	200백만 원
5	■ (미래공간기획관 용산입체도시담당관 → 도시공간전략과) 노량진역 일대지역활성화 방안(시설비)	200백만 원
6	■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도시재창조과) 도심부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시설비)	105백만 원

(3) 예산전용·변경·예비비지출 해당 없음

2)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

(1) 명시이월

○ 해당없음

(2) 사고이월

○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세출결산 결과 사고이월액은 예산
현액 337억 33백만 원 대비 15.9%인 53억 78백만 원임

<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A)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B/A)
		소계(B)	명시이월	사고이월	
총 계	33,733	5,378	-	5,378	15.9%
일반회계	23,598	3,603	-	3,603	15.3%
주택사업특별회계	3,009	952	-	952	31.6%
도시개발특별회계	7,126	823	-	823	11.6%

<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부서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이월률 (C/A)
			계(C)	명시이월	사고이월			
총 계	33,733	25,611	5,378	-	5,378	-	2,744	15.9%
도시공간 전략과	3,596	2,962	372	-	372	-	262	10.3%
도시계획과	3,556	2,648	861	-	861	-	48	24.2%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2,780	1,563	1,178	-	1,178	-	39	42.4%
도시 재창조과	3,222	2,241	952	-	952	-	29	29.5%
신속통합 기획과	7,472	5,043	753	-	753	-	1,676	10.1%
시설계획과	6,979	5,540	916	-	916	-	522	13.1%
토지관리과	1,990	1,586	347	-	347	-	57	17.4%

□ 일반회계 사고이월

-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을 단위사업으로 구분해보면 ▲2024 도시계획 정책 현안검토 운영, ▲국립서울현충원 주변부 공간구상,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 ▲저층 주거지 관리체계 개선,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사무관리비),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시설비), ▲미래서울 도시관 조성, ▲신속통합기획 수립, ▲新 용산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구상 등 15건에서 총 36억 3백만 원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사고이월 현황 >

총 16건		36억 3백만 원
1	■ 2024 도시계획 정책 현안검토 운영(시설비)	86백만 원
2	■ 국립서울현충원 주변부 공간구상(시설비)	286백만 원
3	■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 마련(시설비)	191백만 원
4	■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시설비)	230백만 원
5	■ 저층 주거지 관리체계 개선(시설비)	39백만 원
6	■ 보행일상권 조성계획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시설비)	99백만 원
7	■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연구용역비)	178백만 원
8	■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사무관리비)	49백만 원
9	■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시설비)	75백만 원
10	■ 미래서울 도시관 조성(시설비)	1,178백만 원
11	■ 신속통합기획 수립(시설비)	753백만 원
12	■ 新 용산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구상(시설비)	96백만 원
13	■ 특별계획구역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시설비)	43백만 원
14	■ 新지구단위계획 체계 개편 및 수립기준 재정비(시설비)	191백만 원
15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연구용역비)	110백만 원

① 2024 도시계획 정책 현안검토 운영

- 서울의 도시공간 현안 이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철도지하화 주변지역 기본구상 수립’, ‘지속가능한 입체기반시설 설치운영기준 마련’, ‘도시관리계획(경관지구) 재정비’ 등 총 9개 용역이 추진되었는데 그 중 ‘도시계획시설 온라인 정보 고도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 종합공간구상’, ‘서울올림픽 인프라의 공간배치 전략 구상’ 등 3개 용역에서 예산현액 1억 52백만 원 중 86백만 원(56.3%)을 사고이월 하였음

< ‘2024 도시계획 정책 현안검토 운영’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	이월률 (C/A)
			명시이월	사고이월		
2024 도시계획 정책 현안검토 운영 (시설비)	492	385	-	86	21	17.4%
서울시 철도지하화 주변지역 기본구상 수립	150	150	-	-	-	-
지속가능한 입체기반시설 설치운영기준 마련	22	21	-	-	0.7	-
도시관리계획(경관지구) 재정비	80	65	-	-	15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22	22	-	-	0.4	-
도시계획시설 온라인 정보 고도화	22	-	-	21	0.7	97%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 종합공간구상	75	38	-	38	-	50%
민관협력을 통한 터미널 재구조화 전략 마련	22	22	-	-	0.4	-
서울올림픽 인프라의 공간배치 전략 구상	55	27	-	27	2	48.5%
관광인프라 구축 위한 대학기숙사 활용 모델 개발 등(23년 사고이월)	42	42	-	-	-	-
예산잔액	2	-	-	-	2	-

- ‘도시계획시설 온라인 정보 고도화’ 용역은 ’24.8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5.2월에 종료된 사업으로 준공 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인 것으로 확인됨
 - 최초 용역 시행계획 수립⁶⁾ 시 ’24.5월부터 ’24.11월까지 총 6개월 간 과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용역계약 시기가 ’24.8월⁷⁾로 3개월 연기되며 준공이 다음 해인 ’25.2월로 지연된 것임
 - 이는 2024년도 예산의 대부분인 97%를 이월한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용역계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일정 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공정관리와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으로 총 사업 기간의 누적 공정률이 아닌 예산 편성된 당해연도 안에 준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 종합 공간구상’ 용역은 ’24.11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5.2월에 종료된 사업으로 준공 기간 미도래로 인해 사고이월한 것임
 - 최초 용역 시행계획 수립⁸⁾ 시 ’24.8월 방침 수립 및 용역 입찰공고를 하여 ’24.11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용역계약 시기가 ’24.11월⁹⁾로 연기되며 준공이 지연된 것으로 예산현액의 상당 부분(50%)을 사고이월한 것은 사업공정 관리에 차질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향후 사업 일정 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서울올림픽 인프라의 공간배치 전략 구상’ 용역은 ’24.12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5.3월에 종료된 사업으로 준공 기간 미도래로 인해 사고이월한 것임

6)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기술용역 시행계획, 2024.5.10.

7)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도시계획시설 온라인 정보 고도화 용역, 용역계약서 (계약일자: 2024.8.7.)

8)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DDP일대 종합 공간구상 용역」 기술용역 시행계획, 2024.8.7.

9)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 종합 공간구상, 용역계약서 (계약일자: 2024.11.5.)

- ‘2036 서울올림픽 기본계획¹⁰⁾’의 인프라부문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 전략구성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바, ’24.11월에 용역 시행계획 수립 및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¹¹⁾를 받고 ’24.12월인 연말에 본 용역을 계약함에 따라 예산을 사고 이월한 것임
- 다른 용역과의 연계를 위해 연말에 용역을 추진한 것은 이해되는 바이나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사전검토 등을 통해 일정 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② 국립서울현충원 주변부 공간구상

- 국가상징공간 조성 및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주변부 등 선도사업 후보지 5개소를 포함한 공간구상 용역으로 2024년 예산현액 3억 원 중 2억 86백만 원(95.3%)을 사고이월 하였음

〈 ‘국립서울현충원 주변부 공간구상’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이월률 (C/A)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립서울현충원 주변부 공간구상 (시설비)	300	0		286	14	95.3%

- 최초 ’24.9월 용역 시행계획 수립¹²⁾ 시 현충원 포함 국가상징공간 후보지 5개소에 대한 유형별 공간구상 마련을 목적으로 용역비 6

10) 체육정책과에서 「2036 서울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및 국내 유치도시 선정 대응 용역」을 통해 기본 계획 수립 예정임 (’24.11. ~ ’25.12. / 8.8억 원)

11)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2036서울올림픽 인프라의 공간배치 전략 구상 용역 시행계획, 2024.11.20.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24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도시계획균형위원회), p.52

- 사업기간 : 2024. 3. ~ 2025.5. (15개월)

- 소요예산 : 621백만원 (’24년 321백만원, ’25년 300백만원)

- 과업범위 :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주변부

억 원, 용역 기간 15개월로 추진될 예정이었고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는 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음

- 하지만 과업 범위(면적)가 국립서울현충원 주변부 일대 등 5개소로 면적이 축소(40만 m^2 →20만 m^2)되는 등의 이유¹³⁾로 용역비는 50% 감액(3억 원)된 3억 원으로, 용역 기간은 3개월 축소되어 '24.12월부터 '25.12월까지 12개월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됨
- 해당 용역은 최초 2024년 예산계획¹⁴⁾ 수립 시 용역 추진을 '24.3월부터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9개월 지연된 시점에 용역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됨
- 이는 낙찰차액 14백만 원을 제외하면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지은 예산을 전액(100%) 이월한 것으로 당초 계획된 추진 일정 대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됨
- 이에 더해 용역의 과업 범위 축소 및 사업추진 시기 지연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13)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국립서울현충원 주변부 일대 등 공간구상 용역」 용역 시행 계획(변경), 2024.10.2.
- 변경내용 : 과업범위(면적) 축소(40만 m^2 →20만 m^2)등에 따른, 용역기간 및 용역비 축소

	기 정	변 경	비 고
용 역 비	600,000천 원	300,000천 원	감 300백만 원
용 역 기 간	15개월	12개월	감 3개월

1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24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도시계획균형위원회), p.54
- 사업기간 : 2024. 3. ~ 2025.5. (15개월)
- 소요예산 : 621백만원 ('24년 321백만원, '25년 300백만원)
- 과업범위 :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주변부

③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

- 도시공업지역법 제정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및 산업혁신거점 조성 전략 수립을 위한 것으로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 용역’,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2개 용역으로 예산 현액 3억 78백만 원 중 2억 30백만 원(60.9%)을 사고이월 하였음

〈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	이월률 (C/A)
			명시이월	사고이월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 (시설비)	378	148	-	230	0	60.9%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용역	295	148	-	148	0	50%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83	0	-	83	0	100%

-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23.4월 장기계속계약으로 용역을 체결하여 ’23.12월 1차년도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2차년도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인 것으로 확인됨
- 최초 용역 시행계획¹⁵⁾에 따라 대로 1차년도 과업을 완료 하였으나 2차년도는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관련 관계 기관(부서)과의 협의 등을 위한 기간 소요를 이유로 준공이 ’24.12월에서 ’25.6월로 6개월 연장¹⁶⁾된 사안임

1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도시계획균형위원회), p.57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50,000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용역	2023.3.~2023.12.	300,000	용역 착수 및 1차년도 과업 시행 - 현황분석 및 공업지역 활성화 방향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023.3.~2023.12.	50,00	용역 착수 및 1차년도 과업 시행 - 환경 영향 분석 및 저감 대책 등

16)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2024.12.
-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 용역

- 용역 결과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바이나, 철저한 과업 공정관리 및 부서 협의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당해연도 공정률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함
-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3.8월 장기계속계약으로 용역을 체결하여 ’23.12월 1차년도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2차년도 준공 기간 미도래로 인해 사고이월한 것임
-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연계가 필요한 ‘산업혁신 거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의 준공 지연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소요 기간 등의 이유로 준공이 ’24.12월에서 ’25.6월로 6개월 연장¹⁷⁾된 사안임
-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와 연계하여 과업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일정 조정 등으로 기간이 소요되는 주민 등의 의견 검토¹⁸⁾내용 반영으로 과업이 연장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약기간	총차	'23.04.28.~'24.12.31.	'23.04.28.~'25.06.30.	
	2차	'24.01.01.~'24.12.31.	'24.01.01.~'25.06.30.	
계약금액	총차	595,000,000원	595,000,000원	변경없음
	2차	295,000,000원	295,000,000원	변경없음

17)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2024.12.

- 서울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약기간	총차	'23.08.04.~'24.12.31.	'23.08.04.~'25.06.30.	
	2차	'24.01.01.~'24.12.31.	'24.01.01.~'25.06.30.	
계약금액	총차	132,500,000원	595,000,000원	변경없음
	2차	82,500,000원	295,000,000원	변경없음

1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내용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 경우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정책계획”으로 본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④ 저층 주거지 관리체계 개선

- 제1종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 등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도시·건축 제도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2024년 예산현액 4억 95백만 원 중 39백만 원(7.9%)을 사고이월 하였음

< ‘저층 주거지 관리체계 개선’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이월률 (C/A)
			명시이월	사고이월		
저층 주거지 관리체계 개선 (시설비)	495	450	-	39	6	7.9%

- 최초 2024년 예산계획 수립 시 전용주거지역 관리체계 개선 목적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과업 대상 범위가 제1종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2억 원이 증액¹⁹⁾된 최종 5억 원으로 예산²⁰⁾이 편성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4.2월부터 '24.12월까지로 확인됨
- 당초 계획 대비 2개월 지연된 '24.4월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25.1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24.12월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초과 건축물에 대한 완화 대책 등을 고려한 대안 검토내용이 추가되어 과업 종료 시점이 '25.4월로 3개월 연장²¹⁾되고 사업추진 지연

19) '23.12월 의원발의 사업으로 예산이 2억 원 증액됨

2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24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저층 주거지 관리체계 개선

회 계	일반회계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기간 2024.02 ~ 2024.12			
사업성격	☒ 신규	☐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 저층 주거지의 특성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관리체계 마련			
사업비 (당해년도)	500,000천원	[국비]	[시비]5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21)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2024.12.10.

등의 사유로 2개월이 추가로 연장되어 최종 '25.6월로 준공 시점이 조정²²⁾되었음

- 과업 추진 기간이 연장된 만큼 향후 남은 과업 기간에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이에 더해 과업 내용 추가에 따른 기존 과업 내용의 축소 또는 추가 보수 등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20% 한시 규정 만료 도래에 따른 연장 타당성 점검 및 장래 서울시 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에 대한 수요 파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용역으로 2024년 예산현액 2억 원 중 1억 78백만 원(89.1%)을 사고이월 하였음

〈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	이월률 (C/A)
			명시이월	사고이월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 (연구용역비)	200	0	-	178	22	89.1%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용역기간	'24.4.9.~'25.1.8.	'24.4.9.~'25.4.8.	증) 90일

※ 계약금액 (489,500천 원) 변동없음

- 변경사유 : 8.8대책(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저층주거지 포함)에서 용적률 초과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대책 등을 고려한 대안 검토의 추가 기간에 필요한 과업기간 연장 필요

22) 도시공간본부 사고이월 용역 내역 (2025.5.27. 기준)

부 서	용역명	사업비 (천원)	이월액 ('24 → '25)	사업기간	현 황
도시계획과	저층 주거지 관리체계 개선	489,500	39,160	'24.4.9. ~'25.6.8.	진행중

-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²³⁾ 2억 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24.5월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4.9월 계약을 체결하여 '25.9월 준공이 예정된 용역으로 당해연도 준공 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용역은 낙찰차액 22백만 원을 제외하면 서울시장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지은 예산을 전액(100%) 이월한 것으로 이는 공정관리와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며 총 사업 기간의 누적 공정률이 아닌 당해연도 안에 예산집행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함
- 이에 더해 '25.1월 「도시계획 조례」 부칙 제2조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비율 유효기간 연장²⁴⁾을 위한 근거자료로 해당 용역의 중간 결과물이 일부 활용되었으나 철저한 사전 점검 및 과업 공정관리를 통해 조례개정 이전에 용역을 완료하여 해당 결과물을 활용했어야 했다고 판단됨

⑥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사무관리비)

- 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합리적 고도제한 완화 기준 제시 및 공론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를 위한 용역으로 2024년 예산현액 50백만 원 중 49백만 원(97.0%)를 사고이월 하였음

23)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4년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6.14., p.9 : 신규사업으로 편성

2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1. 3.] [서울특별시조례 제9439호, 2025. 1. 3., 일부개정] 부칙 제2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변경 및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변경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51조제2항제3호와 별표 16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규정은 2028년 3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까지 적용한다.

<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사무관리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이월률 (C/A)
			명시이월	사고이월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사무관리비)	50	0.6	-	49	0.9	97.0%

-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²⁵⁾으로 50백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과 연계하여 2024년 말 세미나 개최 예정²⁶⁾이었으나 당초 ’24.8월²⁷⁾보다 3개월 지연된 ’24.11월 연말에 용역이 체결되어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과업 추진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대부분 (97%)을 이월한 것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관리가 필요했다고 판단되며 사업추진 지연 등의 이유를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⑦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시설비)

-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간 개발 소외 지역에 대한 정비지원 및 도시공간 활성화 구상을 위한 용역으로

25)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4년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6.14., p.10 : 신규사업으로 편성

26)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 구상 기술용역 시행 계획, 2024.5.
- 서울시 차원의 합리적 고도제한 완화 기준 제시를 위한 적극적 공론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 별도 개최 (’24년 말)

27)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4년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6.14., p.12
-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2024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용역발주 및 계약	2024.07~2024.07
과업수행	2024.08~2025.12
세미나 개최	2024.08~2024.10

2024년 예산현액 1억 50백만 원 중 75백만 원(50.0%)을 사고
이월 하였음

<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시설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이월률 (C/A)
			명시이월	사고이월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시설비)	150	75	-	75	0	50.0%

- 2024년 제1차추가경정예산²⁸⁾으로 1억 50백만 원이 신규 편성되
었으며 '24.10월 장기계속계약으로 용역을 체결²⁹⁾하였고 '25.4월
1차년도 준공 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인 것으로 확인됨
- 김포공항 인근 지역인 강서·양천·구로·금천구 등은 1951년 제정된
공항고도 제한 국제기준과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³⁰⁾에 따라
1958년 공항고도 제한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음
- '23.5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³¹⁾는 '28.11월에 공항고도 제
한 국제기준 개정 시행을 목표로 안전성 평가 등 관련 연구³²⁾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서울시장은 '23.9월³³⁾ 국제민간항공

28)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4년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6.14., p.10 : 신규사업으로 편성

29) 도시공간본부 사고이월 용역 내역 (2025.5.27. 기준)

부서	용역명	사업비 (천원)	이월액 (‘24 → ‘25)	사업기간	현황
도시계획과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시설비)	588,000 (1차: 150,000) (2차: 300,000) (3차: 138,000)	75,000(1차)	'24.10.29. ~'26.10.28.	1차 완료 (‘25.4.30) 진행중

30) 「공항시설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이후에는 해당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할 수 있다.

31) 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32) 조선비즈, 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추진 국제항공기구... 오세훈 "조속히 개정", 2023.9.19.

33) (보도자료) SBS Biz, 김포공항 '고도제한 벽' 완화 기대... 오세훈, 국제기준 개정 촉구, 2023.9.19.

기구(ICAO) 의장 면담에서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을 설명하며
공항고도 제한 국제기준 재검토와 조속한 시행을 요청한 바 있음

-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추진되는 이번 용역은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며 공항고도 제한 국제기준 개정 일정을 충분히 고려³⁴⁾하여 서울시의 제안이 국제기준 개정 내용에 수용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 및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임
- 이에 더해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과 연계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합리적인 완화 방향 설정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⑧ 미래서울 도시관 조성

- 서울 대개조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서울시 도시공간 철학을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도시전시관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으로 2024년 예산현액 16억 원 중 11억 78백만 원(73.6%)을 사고 이월 하였음

< ‘미래서울 도시관 조성’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이월률 (C/A)
			명시이월	사고이월		
미래서울 도시관 조성 (시설비)	1,600	422	-	1,178	0	73.6%
전시공간 설계 및 전시 콘텐츠 기획	422	422	-	0	0	0%
전시시설 설계 및 콘텐츠 제작설치	1,178	0	-	1,178	0	100.0%

34)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 구상 기술용역 시행 계획, 2024.5.16.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항안전과 주변개발 간 조화를 위해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추진 중

1) (ICAO) 개정초안 마련(‘23.5월) → 회원국 의견조회(‘23.10월) → 전면시행(‘28.11월)

2) (국토부)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국내 적용방안 연구용역 중 (‘23.7월~’24.6월)

- 최초 2024년 예산계획 수립³⁵⁾에 따라 1차년도 용역 예산은 16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용역 기간은 '24.1월부터 '25.7월까지 총 19개월간 추진될 예정이었음
- '전시공간 설계 및 전시 콘텐츠 기획'은 공간기획 기본구상안, 미디어 콘텐츠 기획안, 운영 및 유지관리 등 계획수립 등 기본설계를 위한 것으로 '24.3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4.9월 준공되었음
- '전시시설 설계 및 콘텐츠 제작·설치' 용역은 기 추진된 기본설계 내용을 근거로 전시시설 및 콘텐츠 제작·설치, 시설물의 업데이트 계획 및 유지보수 관리방안 등 전시시설 설치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24.12월 장기계속계약으로 용역을 체결하여 '25.5월 1차년도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2차년도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사고이월³⁶⁾한 것임
- '전시공간 설계 및 전시 콘텐츠 기획' 용역은 예정대로 '24.9월인 당해연도에 준공되었으나 '전시시설 설계 및 콘텐츠 제작·설치' 용역은 '24.12월 연말에 용역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예산현액 11억 78백만 원 전액(100%) 사고이월 되었으며 최초 2024년 예산 계획 수립 계획 대비 용역 준공 시점이 5개월 지연된 '25.12월로 변경³⁷⁾되었음
- 이는 사업공정관리에 차질이 있었다고 보이는 바, 정해진 기간 안에

3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24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도시계획균형위원회), p.114

- 사업기간 : 2024.1월~ 2025년 7월 (19개월)

36) 2024년 예산 : 16억 원

- 전시공간 설계 및 전시 콘텐츠 기획 : 4억 22백만 원 (용역 기간: '24.03월 ~ 09월)

- 전시시설 설계 및 콘텐츠 제작·설치(1단계) : 11억 78백만 원 (용역 기간: '24.12월 ~ '25.12월)

37)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미래서울도시관 전시시설 설계 및 콘텐츠 제작·설치 용역」 추진계획, 2024.7.25.

- 미래서울도시관 조성개요

1) 위 치 : 서울시청 본관 지하 1층 일부공간 (現 활짝라운지 일대)

2) 규 모 : 1,893m²

3) 사업기간 : 2024. 3. ~ 2025. 12.

연계된 두 개의 용역이 당초 계획대로 계약이 체결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했다고 생각함

- 과업 추진 기간이 연장된 만큼 향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준공 지연, 사업비 증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당해연도 안에 준공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⑨ 신속통합기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등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68억 78백만 원 중 7억 53백만 원(11.0%)을 사고이월 하였음

< ‘신속통합기획 수립’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이월률 (C/A)
			명시이월	사고이월		
신속통합기획 수립 (시설비)	6,878	4,449	-	753	1,676	11.0%

< ‘신속통합기획 수립’ 사고이월 발생 11개소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이월률 (C/A)
			명시이월	사고이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1개소	1,883	1,130	-	753	0	40.0%
(창신동 629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2차)	219	131	-	88	0	40.0%
(창신동 23-606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2차)	241	145	-	96	0	40.0%
(사근동 293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2차)	80	48	-	32	0	40.0%
(미아동 791-2882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2차)	241	145	-	96	0	40.0%
(신림동 650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1차)	228	137	-	91	0	40.0%

(개봉동 49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1차)	159	95	-	64	0	40.0%
(오류동 4번지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1차)	124	74	-	50	0	40.0%
(독산동 1036번지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1차)	215	129	-	86	0	40.0%
(독산동 1072번지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1차)	204	122	-	82	0	40.0%
(종암동 125-35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2차)	80	48	-	32	0	40.0%
(면목동 172-1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2차)	92	55	-	37	0	40.0%

- 사고이월액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1개소³⁸⁾에 대한 대상지 건축 기획설계 및 정비계획수립 지원(2차)을 위한 시설비에서 발생하였음
- 개봉동 49, 오류동 4번지, 종암동 125-35, 면목동 172-1 등 4개소는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한 것으로 총 사업 기간의 누적 공정률이 아닌 예산이 편성된 당해연도 안에 준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창신동 629, 창신동 23-606, 사근동 293, 미아동 791-2882 등 4개소는 과업 내용 미완료에 따라 과업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됨
- 신림동 650, 독산동 1036번지, 독산동 1072번지 등 3개소는 주민 의견 수렴 및 협의 지연에 따라 과업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신속통합기획 사업은 특히 사전 단계에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소통 창구인 주민참여단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여 계획된 기간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8)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1개소 : 1) 창신동 629일대, 2) 창신동 23-606일대, 3) 사근동 293일대, 4) 미아동 791-2882 일대, 5) 신림동 650일대, 6) 개봉동 49일대, 7) 오류동 4번지 일대, 8) 독산동 1036번지 일대, 9) 독산동 1072번지 일대, 10) 종암동 125-35 일대, 11) 면목동 172-1 일대

< ‘신속통합기획 수립’ 사고이월 11개 대상지 현황 >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변경사유
	당 초	변 경	
창신동 629일대(2차)	24.01.01. ~24.12.31.	24.01.01. ~25.06.30.	- 과업 내용 미완료에 따른 과업기간(준공기한) 연장
창신동 23-606일대(2차)	24.01.01. ~24.12.31.	24.01.01. ~25.06.30.	- 과업 내용 미완료에 따른 과업기간(준공기한) 연장
사근동 293일대(2차)	24.01.01. ~24.12.31.	24.01.01. ~25.06.30.	- 과업 내용 미완료에 따른 과업기간(준공기한) 연장
미아동 791-2882일대(2차)	24.01.01. ~24.12.31.	24.01.01. ~25.06.30.	- 과업 내용 미완료에 따른 과업기간(준공기한) 연장
신림동 650일대(1차)	24.05.30. ~25.01.29.	24.05.30. ~25.07.29.	- 의견 수렴 등을 위한 기간 소요 및 추가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주민설명회 일정 미확정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장
개봉동 49일대(1차)	24.05.20. ~25.01.19.	-	-
오류동 4번지 일대(1차)	24.05.20. ~25.01.19.	-	-
독산동 1036번지 일대(1차)	24.05.24. ~25.01.23.	24.05.24. ~25.07.23.	- 절차진행을 위한 기간 소요 및 신속통합기획(안) 협의 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
독산동 1072번지 일대(1차)	24.05.24. ~25.01.23.	24.05.24. ~25.07.23.	- 절차진행을 위한 기간 소요 및 신속통합기획(안) 협의 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
종암동 125-35일대(2차)	24.11.01. ~25.07.31.	-	-
면목동 172-1일대(2차)	24.11.01. ~25.07.31.	-	-

⑩ 新 용산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구상

-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개발 등에 따라 변화된 주변 환경
연계, 경부선 지하화와 연계한 입체적 공간환경 조성, 수변길
조성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으로 2024년 예산현액 3억
40백만 원 중 96백만 원(28.2%)을 사고이월 하였음

< ‘新 용산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구상’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이월률 (C/A)
			명시이월	사고이월		
新 용산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구상 (시설비)	340	244	-	96	0	28.2%

- 최초 2023년 예산계획 수립³⁹⁾에 따라 총사업비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용역 기간은 '23.3월부터 '24.10월까지 총 20개월간 추진될 예정이었음
- 하지만 당초 계획 대비 4개월 지연되어 '23.7월부터 '25.1월까지 장기계속계약 용역을 체결⁴⁰⁾하였고 '24.4월 1차년도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사고이월이 1억 원 발생하였고 2차년도 또한 준공 기간 미도래로 인해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新 용산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구상' 사고이월 현황 >

(단위: 백만 원)

회계연도	예산액 (A)	예산현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2023년	250	250	-	100	150
2024년	240	340	-	96	244

- '23.11월⁴¹⁾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등 여건 변화 검토를 반영하기 위해 준공 시점을 '25.1월에서 '25.4월로 3개월 연장

3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도시계획균형위원회), p.126~127.

- 총사업비 : 5억 원
- 사업기간 : 2023.3월 ~ 2024년 10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x-) 500	(x-) 500	(x-) 500	(x-) 250	(x-) 250
시설비	(x-) 500	(x-) 500	(x-) 500	(x-) 250	(x-) 250

40) 용역명 : 미래용산 신도심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 계약기간 : 2023. 7. 3. ~ 2025. 1. 2. (총 550일)
- 1차 : 2023. 7. 3. ~ 2023. 12. 31. (182일)

41)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미래용산 신도심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계약기간 연장계획 보고, 2023.11.30.

- 계약기간 연장계획 : 계약금액 변경없는 계약기간의 연장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계약 기간	총차 2023.7.3. ~ 2025.1.2.	2023.7.3. ~ 2025.4.4.	증92일
	1차 2023.7.3. ~ 2023.12.31.	2023.7.3. ~ 2024.4.1.	증92일

(1차 변경)하였고 '24.3월⁴²⁾ 용산일대 현안 등 여건 변화 등 내용을 과업 내용에 반영하기 위해 준공 시점을 다시 '25.4월에서 '25.7월로 연장(2차 변경)하였음

〈 ‘新 용산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구상’ 용역 기간 변경 현황 〉

구 분	용 역 기 간	변 경 시 기	변 경 사 유
당 초	2023. 3월~ 2024. 10월	2023년 11월	
용역계약 체결	2023. 07. 03. ~ 2025. 01. 02.	2023. 07. 03.	용역계약 체결 시점 지연 (4개월 지연)
1차 변경	2023. 07. 03. ~ 2025. 04. 04.	2023. 11. 30.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등 여건 변화 검토내용 반영 (준공 시점 3개월 연장)
2차 변경	2023. 07. 03. ~ 2025. 07. 04.	2024. 07. 04	용산일대 현안 등 여건 변화 등의 내용을 과업 내용 (준공 시점 3개월 연장)

- 해당 용역은 최초 용역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2회에 걸쳐 사고이월이 발생하며 준공 시점 지연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당해연도에 계획된 일정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대상지인 용산 일대의 현안 및 여건 변화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향후 준공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 주택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

- “주택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을 단위사업으로 구분해보면 ▲광희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녹지 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 등 5건에서 총 9억 52백만 원이 발생하였음

42)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미래용산 신도심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장기2차), 용역변경계약서 (변경일자: 2024.03.26.)

- 변경전금차완수일자 : 2025/04/04
- 변경후금차완수일자 : 2025/07/04

< 주택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 현황 >

총 5건		9억 52백만 원
1	■ 충무로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시설비)	239백만 원
2	■ 광희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시설비)	144백만 원
3	■ 주교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시설비)	99백만 원
4	■ 효제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시설비)	196백만 원
5	■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시설비)	274백만 원

① 광희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광희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2024년 예산현액 3억 61백만 원 중 1억 44백만 원(40.0%)을 사고이월 하였음

< ‘광희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	이월률 (C/A)
			명시이월	사고이월		
광희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시설비)	361	216	-	144	0	40.0%

- '22.9월 신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3.3월 장기계속계약⁴³⁾으로 '23.3월부터 '25.1월까지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23.12월 1차년도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2차년도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사고이월한 것임

43) 광희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23.3.24.~'25.1.15.[1차('23.3.24.~12.31.), 2차('24.1.1.~'25.1.15.)]
- 용역비 : 750,500천원[1차(390,000천원), 2차(360,500천원)]
- 용역사 :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주)지아이종합건축사사무소

- 해당 용역은 '24.8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 변경⁴⁴⁾ 사항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반영 등의 이유로 준공이 '25.1월에서 '25.7월로 6개월 연장⁴⁵⁾된 사안임
- 과업 추진 기간이 연장된 만큼 향후 남은 과업 기간에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이에 더해 과업 내용 추가에 따른 기존 과업 내용의 축소 또는 추가 보수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②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

- 종묘~퇴계로 일대 낙후 도심 정비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높이 규제완화를 통한 고밀·복합개발 및 공공기여를 통해 녹지생태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11억 86백만 원 중 2억 74백만 원(23.1%)을 사고이월 하였음

<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이월률 (C/A)
			명시이월	사고이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 (시설비)	1,186	912	-	274		23.1%

* 예산현액(A) : 2023년 사고이월액 86백만 원 + 2024년 추가경정예산 2억 원 포함 (시설비)

44) 서울특별시장,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 고시, 2024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23호)

45)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광희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2024. 12.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계약기간	'23.3.24.~'25.1.15.(총차) '24.1.1.~'25.1.15.(2차)	'23.3.24.~'25.7.15.(총차) '24.1.1.~'25.7.15.(2차)	6개월 연장
계약금액	750,500천원(총차) 360,500천원(2차)	좌 동	변경없음

- '21.10월 세운지구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1.12월 장기계속계약으로 '21.12월부터 '24.6월까지 용역을 체결⁴⁶⁾하였으며, '22.12월 1차년도 준공이 완료됨
- '24.5월 공공 정비계획 수립, 상가군 공원화 방안 검토 등 과업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준공기한이 당초 '24.6월에서 '25.12월로 18개월 연장⁴⁷⁾되어 2차년도 준공 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2억 원⁴⁸⁾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전 절차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⁴⁹⁾에 근거하여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LIMAC⁵⁰⁾)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24.6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5.2월 준공⁵¹⁾⁵²⁾되었음
- 과업 내용의 추가에 따라 준공기한이 연장된 것은 이해되는 바

46) 세운지구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개요

- 용역범위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면적 : 439,356.4m²)
- 용역기간 : '21.12.13. ~ '24.6.20.
- 1차수 : '21.12.13. ~ '22.12.31. / 2차수 : '23.1.1. ~ '24.6.20.
- 용역사 : (주)미래이엔디 + 디에이그룹
- 주요내용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발전방향 정립, 활성화계획 수립 등

47)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세운지구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 설계변경(2차수) 검토 보고, 2024.5.28.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용역기간	'21.12.13. ~ '24.6.20.	'21.12.13. ~ '25.12.20.	증 18개월
추가과업 내용	-	공공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지원 상가군 공원화 방안 검토	

48) 도시공간본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024.5.27.

- '25년도 설계 등 도심공원 조성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전절차로 타당성조사(LIMAC) 비용 200백만원 반영

49) 「지방재정법」 제37조2(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50) 행정안전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 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5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2차 타당성조사 업무 약정 체결 및 수수료 청구(서울 세운지구 도심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2024.6.12.

5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서울 세운지구 도심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2025.02.

이나 사고이월액이 2023년 86백만 원, 2024년 2억 74백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사고이월 발생 이유 등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이에 더해 과업 기간이 연장된 만큼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용역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

-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을 단위사업으로 구분해보면 ▲서울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등 5건에서 총 8억 23백만 원이 발생하였음

〈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 현황 〉

총 5건		8억 23백만 원
1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지원)(시설비)	97백만 원
2	■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설비)	313백만 원
3	■ 수서택지개발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설비)	177백만 원
4	■ 서울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시설비)	51백만 원
5	■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임상불량지 합리적 활용방안 마련(시설비)	185백만 원

① 서울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성을 평가하는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유형 분석을 통해 도시의 취약 지역의 식별 및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재해취약성분석을 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2024년 예산현액 2억 20백만 원 중 51백만 원(23.4%)을 사고이월 하였음

〈 ‘서울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	이월률 (C/A)
			명시이월	사고이월		
서울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220	166	-	51	2	23.4%

- '24.4월 용역계약 및 착수보고회를 실시하고 '24.9~11월 한국 국토정보공사 및 국토연구원에 용역 관련 내용을 검증하였으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여 준공이 당초 '24.12월에서 '25.3월로 3개월 연장⁵³⁾되었음
- 이에 더해 토지적성평가의 별도 분류 보전 대상 지역의 데이터수집 및 재구축 기간 등이 추가로 필요하여 준공이 '25.8월로 5개월 연장⁵⁴⁾되어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 ‘서울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기간 변경 현황 〉

구 분	당 초	1차 변경	2차 변경	비 고
계약기간	'24.04.04. ~ '24.12.31.	'24.04.04. ~ '25.03.31.	'24.04.04. ~ '25.08.31.	기간연장
계약금액	171,600천 원	171,600천 원	171,600천 원	변경없음
변경사유	-	용역 검증내용 추가 조치 필요	데이터 수집 및 재구축 기간 필요	-

- 해당 용역은 '24.4월부터 '24.12월까지의 당초 계약기간 대비 기간이 2차례에 걸쳐 8개월 연장된 사안으로 최초 계획수립 시

53)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2024.12.3.

54)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2025.3.19.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과업 기간을 조정하고 면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준공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다고 생각하며 과업 추진 기간이 연장된 만큼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처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음

- 최근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 및 이상기후 등으로 도시에 미칠 재해 영향에 대한 조사 및 예방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본 용역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3)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

(1) 집행잔액 총괄

-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세출결산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37억 33백만 원 대비 8.1%인 27억 44백만 원이고,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10.6%인 24억 97백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0.9%인 28백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3.1%인 2억 19백만 원이 불용되었음

< 연도별 집행잔액 >

(단위: 백만 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F=A-C-D-E)	불용률% (F/A)
					계	명시이월(D)	사고이월(E)			
2024	30,314	33,733	31,016	25,611	5,378	-	5,378	-	2,744	8.1
2023	22,753	27,781	26,111	23,846	2,587	-	2,587	-	1,348	4.9
2022	17,026	19,742	19,162	16,346	2,816	-	2,816	-	580	2.9

< 2024년도 도시공간본부 집행잔액 현황 >

(단위: 백만 원)

회 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합 계	33,733	25,611	5,378	2,744	8.1
일 반 회 계	23,598	17,499	3,603	2,497	10.6
특 별 회 계	10,135	8,112	1,775	247	2.4
주택사업특별회계	3,009	2,029	952	28	0.9
도시개발특별회계	7,126	6,084	823	219	3.1

-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또는 불용률 10% 이상 사업은 총 12건으로 다음과 같음

① 기본경비

-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 및 부서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하는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36백만 원 대비 40백만 원 (17.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집행잔액 상세 내역 중 ‘국내여비’의 경우 예산현액 1억 6백만 원 대비 37백만 원(34.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기본경비 집행잔액 예산의 대부분(92.1%)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내여비’는 2023년도 예산현액 3억 37백만 1억 69백만 원 (50.1%)의 집행잔액이 발생⁵⁵⁾하여 2024년도 1억 원 감액 (48.0%)한 1억 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여전히 기본경비 통계목 중 가장 높은 집행잔액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55)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p.40
<불용률 10% 이상 사업>

연 번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액 발생사유
1	도시계획과	기본경비	337,210	168,238	-	168,973 (50.1%)	▶ 국내 출장 감소

- 국내 출장 여비, 숙박비 등 비용에 대해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예산 규모를 조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감액 조정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음

〈 ‘기본경비’ 통계목 별 예산 집행을 〉

(단위: 백만 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사무관리비	64	64	-	0 (0%)
국내여비	106	69	-	37 (34.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	15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	3	-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8	45	-	3 (6.6%)
소계	236	196	-	40 (17.0%)

②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및 경관법에 의한 심의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2억 12백만원 대비 58백만 원(27.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추진실적(소위원회 포함)을 살펴보면, 2023년 47회 대비 2024년 11건 감소(△23.4%)한 36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간 추진실적인 안전 및 개최 수 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추진실적 〉

('25.6.9. 기준)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본위원회	소위원회	소계	본위원회	소위원회	소계	본위원회	소위원회	소계
개회 수(회)	20	27	47	18	18	36	10	8	18
안건 수(건)	84	61	145	73	45	118	31	13	44

③ 신속통합기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현액 68억 77백만 원 대비 16억 76백만 원(24.4%)의 집행잔 액이 발생하였음
- 해당 사업은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2차 공모 선정지 2차 년도 용역비 29억 47백만 원과 2024년 용역비 20개소에 대해 32억 원 등 총 61억 47백만 원⁵⁶⁾을 편성⁵⁷⁾하였음

〈 2024년 ‘신속통합기획 수립’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시설비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현황조사 및 건축기획 설계 4,800,000,000원 = 4,800,000천 원	○ 신속통합기획 건축기획설계 및 정책방향수립 6,147,138,000원 = 6,147,138천 원
	증감사유	
	○ 2차 공모 선정지 2차년도 용역비: 2,947,138천 원 ○ '24년 용역비: 3,200,000천 원= 160백만원×20개소 - 1개소 용역비: 160백만 원= 43천원/㎡(공동주택설계비)×125,000(기준연면적) ×3%(기획설계요율) ※ 용역비는 대상지별 연면적에 따라 달라지나, 신규 대상지는 추후 확정됨에 따라 편성기준으로 대지면적 5만㎡(용적률 250%) 적용	

56) 2024년 예산현액은 68억 78백만 원임

5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24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p.122

- 2024년 지출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차 공모 선정지 2차년도 용역비는 당초 계획한 29억 47백만 원 대비 25억 45백만 원을 지출하여 86.4%의 집행률을 보였으나
- 신규대상지 선정 건수는 당초 계획한 20개소 사업지 32억 원 대비 9개소 감소한 11개소에 대해 12억 55백만 원을 지출하여 39.2%의 집행률을 보였음 (붙임1)

< ‘신속통합기획 수립’ 2024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현황 >

(단위: 백만 원)

	2024년 예산액	2024년 지출액	집행률
2차 공모 선정지 2차년도 용역비 (계속사업 2차용역)	2,947	2,545	86.4%
2024년 용역비 (‘25년 신규대상지)	3,200	1,255	39.2%

- 향후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 선정물량에 대해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해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이번에 16억 76백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는데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감액 조정 및 본예산 편성 규모를 조정하여 불용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2024회계연도 도시공간본부 집행잔액 1억원 이상 불용률 10% 이상 사업 >

(단위: 백만 원)

연 번	소관 부서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액 발생사유
1	도시공간 전략과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393	340	-	54 (13.6%)	▶예측 대비 해외 출장 횟수 감소 및 근 거리(일본) 출장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2	도시공간 전략과	서울역 일대 마스터 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	340	248	-	92 (26.9%)	▶당선 결과에 따른 보상비 지급으로 잔 액 및 직접경비 정산에 따른 사업비 조정 낙찰차액
3	도시공간 전략과	기본경비	236	196	-	40 (17.0%)	▶23년 대비 국내여비 대폭 감액 편성 (23년 205,800천원→24년 106,204천원) 하였으나 집행잔액 발생
4	도시공간 전략과	노량진역 일대지역활 성화 방안	200	168	-	32 (15.9%)	▶낙찰차액
5	도시 계획과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	200	-	178	22 (10.9%)	▶낙찰차액
6	도시 재창조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 업 관리	60	42	-	18 (30.5%)	▶자문 회의 수당 등 지출 집행 잔액
7	도시 재창조과	사직2구역 공동이용 시설 관리	7	6	-	1 (10.5%)	▶공동이용시설 관리 지출 집행 잔액
8	신속통합 기획과	신속통합기획 수립	6,878	4,449	753	1,676 (24.4%)	▶신속통합기획 재개발후보지 선정 수 감소에 따른 용역건수 감소로 인한 불 용
9	도시 관리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212	154	-	58 (27.2%)	▶심의대상 감소에 따른 위원회 개최횟 수 축소로 집행잔액 발생
10	도시 관리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 상(The-K호텔) 운영	312	-	-	312 (100%)	▶사전협상 진행중으로 감정평가 미시행
11	토지 관리과	네트워크 RTK시스템 및 KRAS 유지보수	61	55	-	6 (10.6%)	▶계약 심사 및 계약 진행에 따른 낙찰 차액 발생
12	토지 관리과	기본경비	65	59	-	7 (10.3%)	▶지적측량정비 유지 보수 및 업무용 차 량 유지비용으로 수리 등 사유 미발생 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합 계			8,964	5,716		2,316	

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결산

1) 기금 수입 관련 : 해당사항 없음

2) 기금 지출 관련 : 해당사항 없음

3) 기금 결산 종합의견

-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4항⁵⁸⁾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⁵⁹⁾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 제22조⁶⁰⁾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23.2월 '서울역 북부역세권 특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기금 규모는 2,030억 원으로 결정되었고 '23.10월에 기금 운용계획이 수립⁶¹⁾됨에 따라 2,030억 원을 '24년부터 사업 준공까지 5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것을 가정하여 최초 2024년 기금납부 금액을 406억 원으로 수립함
-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⁶²⁾' 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59)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사용 및 납부 등) ①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1)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2023년도 제1차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3.10.23.

62) 서울특별시장, 도시관리계획(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3.1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1호)

'24.9월 사업 착공 후 3개월 이내⁶³⁾인 2024년 하반기에 1회차 금액인 216억 원을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각종 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진행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 착공 시점이 '24.9월에서 '24.11월로 약 2개월 지연(붙임2)됨에 따라 기금 납부 시기가 당초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로 변경되었음

- 이에 따라 '24.12월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기준으로 수입계획 중 '기타수입' 406억 원을 0원으로 변경하고 지출계획 중 '예치금' 406억 원을 0원으로 변경하였음(붙임3)

〈 2024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 〉

- 기금조성계획 비교표 : 협약체결 결과 반영, 기금조성액 406억 원 전액 감액
(단위: 백만 원)

기금명	기정(A)	변경(B)	변경요청액(B-A)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40,600	0	△40,600

- 「지방기금법」 제11조제1항⁶⁴⁾은 예측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소요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바,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위원회 심의와

63)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 협약서 <서울특별시-중구-(주)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제6조(납부기간 및 금액 등) 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사업시행자가 "귀속주체"에게 분할하여 납부하는 시기 및 금액과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1개월은 30일로 한다.

1. 최초납부시기는 착공신고필증 발급일(이하 "착공일") 기준 3개월 이내로 하며, 납부금액은 전체 설치비용의 10%로 한다.

6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따른 지연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했어야 했다고 생각되며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⁶⁵⁾에서는 237억 40백만 원 규모의 기금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안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수입·지출 변경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재정 운영 책임성과 제도적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25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조성 계획 : 총 237억 40백만 원⁶⁶⁾]

(단위: 백만 원)

구 분	'24년도말 조성액 ①	'25년도 조성계획			'25년도말 조성액 (⑤=①+④)
		수입 ②	지출 ③	증감 (④=②-③)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	23,740	—	23,740	23,740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 (단위: 백만 원)

〈지출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4년	2025년	증 감	구 분	2024년	2025년	증 감
계	—	23,740	23,740	계	—	23,740	23,740
기타수입	—	23,740	23,740	예치금	—	23,740	23,740

65)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2025년 제1차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2025.3.11.

66) 산출근거

-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 21.4억(연 1회씩 5회 균등 분할납부 가정)
-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216억(사업자와 협약 결과 반영)

(단위: 천 원)

연번	용역 대상지	지출액	비고
1	번동 148(1차)	98,000	'23년 사고이월
2	종암동 125-35(1차)	48,000	'23년 사고이월
3	남가좌 2동(1차)	5,367	'23년 사고이월
4	미아동 258(1차)	313,600	'23년 사고이월
5	용산구 신동아	128,400	'23년 사고이월
6	면목동 172-1(1차)	55,600	'23년 사고이월
소 계		648,967	-
7	미아동 791-2882(2차)	144,600	계속사업 2차용역
8	사근동 293(2차)	47,760	계속사업 2차용역
9	가리봉동 115(2차)	123,000	계속사업 2차용역
10	상도동 279(2차)	231,000	계속사업 2차용역
11	창신동 629(2차)	131,400	계속사업 2차용역
12	창신동 23-606(2차)	144,600	계속사업 2차용역
13	석관동 62-1(2차)	93,000	계속사업 2차용역
14	마천동 183(2차)	117,988	계속사업 2차용역
15	고척동 253(2차)	106,000	계속사업 2차용역
16	자양4동(2차)	238,000	계속사업 2차용역
17	대림동 855-1(2차)	82,294	계속사업 2차용역
18	시흥동 871(2차)	115,000	계속사업 2차용역
19	망우동 461(2차)	84,000	계속사업 2차용역
20	서계동 33(2차)	215,550	계속사업 2차용역
21	번동 441-3(2차)	80,000	계속사업 2차용역
22	신림동 409(2차)	220,320	계속사업 2차용역
23	신사동 200, 237(2차)	162,180	계속사업 2차용역
24	방학동 685(2차)	105,000	계속사업 2차용역
25	면목동 172-1(2차)	55,200	계속사업 2차용역
26	종암동 125-25(2차)	48,000	계속사업 2차용역
소 계		2,544,892	-
27	개봉동 49(1차)	95,400	'25년 신규대상지
28	오류동 4번지(1차)	74,400	'25년 신규대상지
29	신림동 650(1차)	136,978	'25년 신규대상지
30	독산동 1036(1차)	129,000	'25년 신규대상지
31	독산동 1072(1차)	122,400	'25년 신규대상지
32	미아동 345-1(1차)	119,000	'25년 신규대상지
33	신림동 419(1차)	102,378	'25년 신규대상지
34	쌍문동 81(1차)	132,000	'25년 신규대상지
35	장안동 134-15(1차)	161,892	'25년 신규대상지
36	신길동 314-14(1차)	92,270	'25년 신규대상지
37	중화동 309-39(1차)	88,946	'25년 신규대상지
소 계		1,254,664	-
총 계		4,448,523	

서울역 북부 지구단위계획 사업 지연 관련 질의 답변

'24.11.07. |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2133-8305 공공자산운용팀장: 김홍준 ☎8319 담당: 안아영 ☎8321

□ 질의 답변

○ 서울역 북부 지구단위계획 사업 지연사유

- '23.12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관련 협약체결(시, 중구, 사업시행자) 시 기금확보시기를 '24.하반기로 예상하였으나,
- 착공 이전 관련 위원회(문화재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및 수도방위사령부 등 협의 결과 반영과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진행으로 사업이 지연됨('25.3월 기금확보 예상)

□ 참고자료

○ 문화재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추진경위

일 시	진행사항
2022.09.	1차 문화재위원회 심의(부결)
2022.12.	2차 문화재위원회 심의(부결)
2023.02.	3차 문화재위원회 심의(보류)
2023.03.	문화재위원회 제1차소위원회(조건부가결)
2023.03.	4차 문화재위원회 심의(가결)
2024.04.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서울시)
2024.05.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재심의)

※ 조치계획: 육교 위치 및 방향 조정, 에스컬레이터 라인 축소 등

○ 기금조성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당초금액 ①	변경금액 ②	증감액 ③	비율 (④=③/①)	변경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40,600	－	△40,600	△100%	'24.12.13.

○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계	40,600	－	△40,600
기 타 수 입	40,600	－	△40,600

〈지출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계	40,600	－	△40,600
예 치 금	40,600	－	△40,600

○ 변경 사유 : 기금확보 예상 시점 변경 ('24년 하반기 → '25년 상반기)

- (당초) 서울역 북부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고시('23.2.23.) 기준 감정 평가 금액인 2,030억 원을 '24년 착공부터 준공까지 5회 분할납부를 가정, 406억 원으로 수립
- (변경) 기금운용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자와 서울시 협약체결에 따라 ('23.12.13.) 착공 후 3개월 이내 납부로 결정 및 착공 예정일 지연 ('24.9.→'24.11.)으로 납입 시기 '25년으로 변경

67)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2024년 제1차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2024.10., p.5.